

## 4. 2020년 학사 관련 규정 변경 주요내용

규정	변경 전	변경 후
학 칙	<p><b>제13조(전과(부))</b> ①전과(부)는 재학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하되 필요할 경우 총장은 전과를 제한할 수 있다. 단, 모집단위가 중지된 학과의 재적생은 추가 1회를 허용할 수 있으며, 외국인 학생은 횡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.</p>	<p><b>제13조(전과(부))</b> ①----- ----- ----- 허용할 수 있고, 원적 학과로의 복귀는 전과 후 1년내에 가능하며, ----- -----.</p>
	<p><b>제29조(수강신청)</b> ① ~ ③ (생략) ④개설교과목의 수강자가 전공 10명, 교양 20명 미만인 과목은 개설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, 수강인원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</p>	<p><b>제29조(수강신청)</b>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개설교과목의 <b>폐강여부는 학사운영규정을 따른다.</b></p>
학 사 운 영 규 정	<p><b>제3조(등록)</b> ① (생략) ② (생략) 1.~8. (생략) 9. 실직자 자녀로서 납입기간 중 등록금을 완납할 수 없는 경우, 소정의 연기신청원을 제출한 후 정한 기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. 단,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  10. (생략)</p>	<p><b>제3조(등록)</b>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~8. (현행과 같음) 9.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등록금 분할납부를 원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신청을 해야 하며, 각 차수별 정해진 기간에 납부를 해야한다.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휴학이 가능하다. 단, 계절학기, 신입생·편입생·재입학생 입학학기 및 외국인유학생,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분할납부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. 10. (현행과 같음)</p>
	<p><b>제4조(학적부의 작성 및 관리)</b> ① ~ ③ (생략) ④자퇴 및 제적자의 학적부는 소정란에 제적 사유를 명기하여 관리한다.</p>	<p><b>제4조(학적부의 작성 및 관리)</b>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자퇴 및 제적자의 <b>학적부</b>는 소정란에 제적 사유를 명기하여 관리한다.</p>
	<p><b>제7조(수강신청 및 취득학점의 기준)</b> ① (생략) ②매학기 수강신청 및 취득 기준학점은 졸업이수 학점이 120학점인 경우 17학점, 130학점인 경우 18학점, 140학점인 경우에는 19학점으로 하되, 사업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에 의해 수강신청 학점을 조정할 수 있다.</p>	<p><b>제7조(수강신청 및 취득학점의 기준)</b>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, <b>공동복수학위과정 학생 및 사업단</b> ----- -----.</p>
	<p><b>제28조(성적평가)</b> 성적평가 기준은 교과목 담당교수의 강의계획서에 기재된 평가기준에 의하며, 출석점수 반영 비율은 최소 10%이상 이어야 한다.</p>	<p><b>제28조(성적평가)</b> ----- ----- 의하며, <b>중간·기말·수시 평가의 합을 50% 이상 반영하여야 하며, 출석점수</b> ----- -----.</p>